
2014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저술출판지원사업 신청요강

2014. 1.

연구과제 신청시 필수 확인 사항

① 신청자의 연구업적을 KRI에서 반드시 수정하셔야 합니다.

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KRI)(<http://www.kri.go.kr>) ▶ 신청자 본인의 최신 정보를 입력(수정)함

- KRI에서 본인의 소속, 직위, 이메일, 연구업적 등을 최신 정보로 수정하시고, 정보공개여부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로 설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 신청자 소속대학이 **연구재단과 정보공유 협정체결을 맺은 기관**인 경우, KRI에서 본인의 업적 **직접수정이 불가함**. 이 경우 소속대학의 관련 부서로 연락

☞ 협정체결기관보기 : KRI 홈 > 사업소개 > 협정체결기관



-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KRI에 추가 수정한 정보가 연동되어 반영되지 않으며, 추가로 KRI 정보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함**

※ KRI 정보등록 관련 문의처 : 1544-6118

② 연구계획서에는 연구자의 성명, 소속 등의 개인적 정보를 표기하면 안됩니다.

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는 서명 후 스캔하여 **별도로 온라인 탑재**하세요.

참여인력(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해당시), 연구보조원(해당시)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서명을 하신 후 파일(PDF, HWP, DOC) 형태로 탑재하시면 됩니다.

④ ‘온라인신청안내매뉴얼’ 은 신청접수 1주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므로,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⑤ 신청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시간 3~4시간 전까지 온라인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주요사항 요약 -

구분	2013	2014	비고
지원예산	○ 총예산: 5,300백만원 - 신규: 1,800백만원(165과제) - 계속: 3,000백만원(300과제) - 위탁사업비: 500백만원	○ 총예산: 6,300백만원 - 신규: 3,840백만원(359과제 내외) - 계속: 2,460백만원(246과제 이내)	
지원분야	○ 저술지원(구 인문저술지원) ○ 저술성과확산	○ 좌동 ○ 저술성과확산(학술서) ○ 우수저서사후지원(교양서)	신설
지원대상	○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자에 한함	○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의 연구자 중 연구실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분야	○ 인문사회 전 분야 (예술·체육학 분야 포함)	○ 좌동	
과제당 지원규모/신규과제수	○ 저술지원 : 10백만원/연 신규과제 : 130과제 ○ 저술성과확산 : 15백만원/총 신규과제 : 30과제	○ 저술지원 : 10백만원/연 신규과제 : 254과제 내외 ○ 저술성과확산(학술서) : 15백만원/총 신규과제 : 50과제 내외 ○ 우수저서사후지원(교양서) : 10백만원 신규과제 : 55과제 내외	
지원기간	○ 저술지원 : 3년 ○ 저술성과확산 : 2년	○ 저술지원 : 2년 또는 3년 ○ 저술성과확산(학술서) : 2년 ○ 우수저서사후지원(교양서) : 1년	
평가절차	○ 요건심사→전공평가 (온라인+PM Review)→종합평가	○ 저술지원, 저술성과확산(학술서) - 요건심사→전공평가 (온라인+PM Review)→종합평가	
결과보고서 및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 결과보고서 : 연구종료 후 1년 이내 ○ 학술활동결과물 : 연구종료 후 2년 이내 - 출판완료 도서 2부 - 저술완성분량 : 300쪽 이상	○ 좌동 ○ 좌동	
추진일정	○ 신청마감 : 2월중, 평가 : 3~4월 선정통보 : 4월말, 연구개시 : 5.1	○ 신청마감 : 4.1, 평가 : 4~6월 선정통보 : 6월말, 연구개시 : 7.1 ※ 우수저서사후지원(교양서)의 경우 8월 접수/9~10월 평가/연구개시 11.1.	

※ 우수저서사후지원(교양서)은 추후 별도 공고

- 차례 -

I. 사업목적 및 개요	1
II. 지원내용	3
III. 신청	4
1. 신청자격	4
2. 신청 및 참여제한	4
3. 신청기간 및 방법	6
3. 신청절차	6
IV. 평가 및 선정	9
V. 사업비 관리	11
VI. 연구과제 관리	13
1. 평가유형 및 평가내용	13
2.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및 결과문 제출	16
3. 학술활동 성과 관리	17
VII. 기타사항	18
[붙임1] 평가항목 및 배점	19
[붙임2-1] 저술계획서 양식(저술지원)	21
[붙임2-2] 저술계획서 양식(저술성과확산)	22
[붙임3] 연구이력소개서 양식	23
[붙임4] 대표 연구업적요약문 양식	24
[붙임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양식	25
[붙임6] 저술출판지원사업 FAQ	26

1. 사업목적

- 우수한 인문·사회과학자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저술·발간을 지원함으로써 학술 성과 및 연구경험을 축적
- 연구성과의 소통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중과 학계의 교류·이해에 기여

2.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3조(정부의 책무) 및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3. '14년 중점 추진방향

- 연구자가 스스로 저술출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 저술출판지원 연구기간 조정(3년 연구 → 2년 또는 3년 연구)
- 대학 및 국·공립도서관과 연계하여 출간도서를 안내하고, 우수 출간도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 저술출판지원 성과 홍보 강화
- 인문사회분야 연구 성과 도출 및 사업추진의 효과성 제고
 - 기존 연구성과를 확장하고 새로운 연구결과가 반영된 학술전문저술 지원
 - 사업비를 지원받지 않은 우수저서를 사후에 지원하여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 고취
 - ※ 우수저서사후지원사업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후 별도 공고

4. 기대효과

- 우수 저술 지원을 통해 인문학·사회과학의 사회적 활용 및 학문적 소통 증진
- 기 발표된 논문 성과를 저술로 출판함으로써 연구성과 확장 및 대중성 확보

5. 추진일정

일 정	추진 내용
2014.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도 저술출판지원사업 시행계획 확정·시행 ▪ 신규과제 신청 공고
2014.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과제 신청접수(~4월초 마감)
2014.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과제 요건심사
2014.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과제 선정평가 실시(5~6월) ▪ 우수저서사후지원(교양서) 신청 공고(예정)
2014.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과제 선정 통보(6월말)
2014.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과제 연구개시
2014.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저서사후지원(교양서) 신청 접수(~8월말 마감)(예정)
2014.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저서사후지원(교양서) 선정 평가 실시(9~10월)(예정)
2014.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저서사후지원(교양서) 연구개시

II

지원내용

1. 예산

(단위:백만원/과제)

구분		예산액	지원예정 과제수	비 고
신규과제	저술지원	2,540	254과제 내외	
	저술성과확산(학술서)	750	50과제 내외	
	우수저서사후지원(교양서)	550	55과제 내외	
	소 계	3,840	359과제 내외	
계속과제(저술지원)		2,460	246과제 이내	
합 계		6,300	605과제 내외	

※ 신규과제 선정은 '유형별 지원계획'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유형별 신청과제수 및 선정율을 고려하여 예산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2. 지원분야

- 지원분야 : 인문사회 분야(예술·체육학 포함)

3. 지원유형

- 저술지원 : 인문사회분야 연구자의 저술활동 지원
- 저술성과확산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을 통해 기 수행한 과제의 결과물(논문 등)이 저술 발간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구분	저술지원	저술성과확산(학술서)	비고
지원규모	연간 10백만원	총 15백만원	
지원기간	2년 / 3년	2년	
연구유형	단독연구	단독 및 공동연구	

- ※ 기 수행한 과제의 연구결과물이 '저술'인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저술지원 : 2년 / 3년 연구기간 선택가능
- ※ 저술성과확산 : 단독 및 공동연구 모두 가능하며, 1책 3공에서 제외

4. 연구개시

- 연구개시일 : 2014년 7월 1일

1. 신청자격

-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자로서 아래와 같은 연구업적이 논문 3편 이상이 있는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 ※ 연구책임자는 사업비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소속 연구자이어야 함

< 연구업적 산정 방식 >

- 업적산정기간 : 2009년 1월 1일부터 온라인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는 1편
- 저서·역서 : 단독 저자는 논문 3편, 공동 저자는 논문 2편으로 산정
- 특허 : 특허 1건은 논문 1편으로 산정
- ※ 상기 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평가 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신청 시 입력

- ‘저술성과확산 분야’ 는 ‘14년 이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을 수행한 연구과제 중, 기존의 연구성과를 수정·보완하여 저술출판 계획을 갖고 있는 우수 연구자

2. 신청 및 참여제한

□ 신청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상반기 선정 사업” 내에서는 1과제만 신청 가능
 - ※ 학문후속세대(박사후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신진연구자지원, 중견연구자지원, 저술출판지원 중 저술지원, 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지원, 기초학문자료센터 중 1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를 받고 있거나 학술활동결과물 제출 의무 미이행 연구자
 - 신청 이전 교육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았으나, 해당 연구과제의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학술활동결과물 제출 의무(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로 인하여 현재 제재 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 교육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
- 이와 같은 참여제한 과제 수의 범위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3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과제임
- 다만,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종료일이 2014. 12. 31.까지인 과제는 참여제한 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연구종료일이 2015. 1. 1. 이후인 과제라도 우수학자지원, 우수논문지원, 정책중점연구소지원, 학제간융합연구지원 중 융합연구총괄센터, 사회과학 연구지원 중 SSK네트워크지원 등 단기과제, 인문학대중화지원 중 시민인문강좌, 상설인문강좌 등은 참여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

- 연구과제 신청이 완료된 이후라도 신청한 과제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면 최종 선정에서 제외됨
- 사업비 지급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연구과제 신청 이후라도 참여제한이 확인되면, 최종 선정에서 제외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연구자 신청 : 2014. 3. 26.(수), 14:00 ~ 4. 1.(화), 18:00까지
 - 기 관 확 인 : 2014. 4. 2.(수), 14:00 ~ 4. 3.(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신청안내매뉴얼 참조)
 - 온라인신청안내매뉴얼은 신청일 1주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제출서류
 - ※ 계획서 내에 저술완성 분량을 예상하여 제시하여야 함 (300페이지 이상, 제한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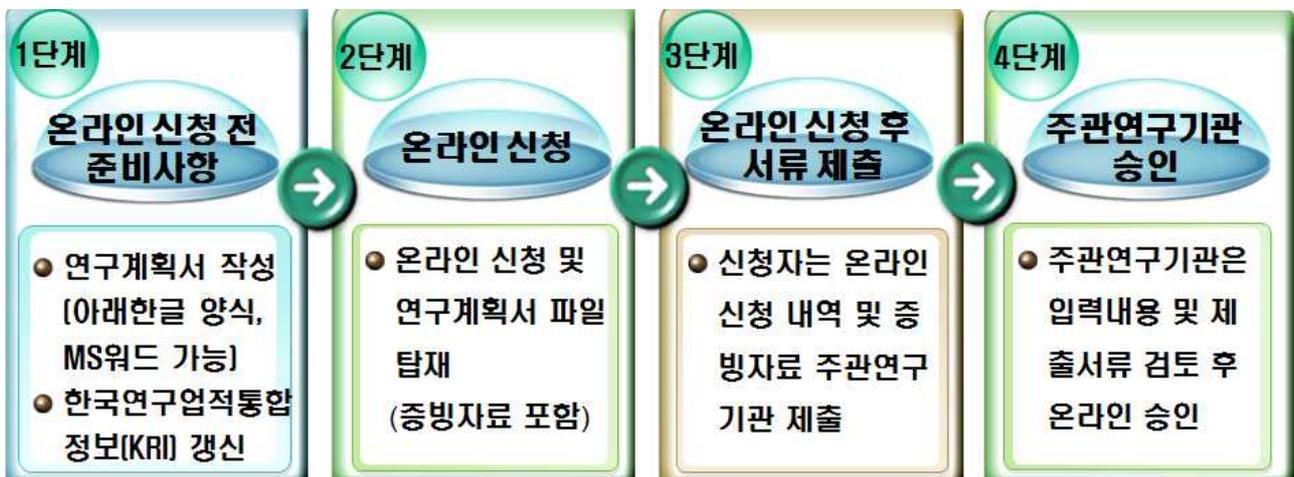
가) 저술지원

- 저술계획서(출판계획 포함) : A4 5~10페이지
- 연구이력소개서 및 대표업적요약문, 양식 참고

나) 저술성과확산

- 저술계획서(출판계획 포함) : A4 5~10페이지
- 연구이력소개서 및 대표업적요약문, 양식 참고

4. 신청절차



가. 온라인 신청 전 준비사항

- 1) 신청자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빠른메뉴 → 「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 (KRI)」에서 본인의 연구업적 등의 정보를 최신 정보로 입력(수정)하여야 함
 - 신청자의 KRI 입력내용 중 소속, 직위, 이메일 주소 등 필수 입력사항을 미기재한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함. 아울러 KRI내에서 신청자의 정보공개여부 입력란은 반드시 ‘공개’ 로 설정하여야 함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이후에는 KRI에 추가 수정한 정보가 연동되어 반영되지 않음. 따라서, KRI에 최신 정보로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을 취소하고 KRI 정보를 수정한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함
- 2)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붙임2]의 저술계획서 파일을 탑재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 전에 한국연구재단의 「훈글」 양식으로 미리 작성하여야 함 (「MS워드」 작성가능)
- 3) 시간강사는 사전에 신청기관을 정하여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와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신청 전·후 원활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4)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평가요청학문분야 및 담당 학문단을 ‘연구분야 분류표’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 연구분야분류표 확인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자료실→연구분야 분류표→[학술연구분야분류](#)[클릭]
 - ※ 연구분야 및 평가관련 사항은 해당 학문단으로 문의

나. 온라인 신청

- 1) 신청자는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사항"을 입력하고, 작성한 "저술계획서" 파일을 탑재하여야 함(접수번호는 온라인 신청완료 후에만 볼 수 있음)
- 2) 연구책임자의 대표업적은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연구업적 중 3편을 선택하여야 함
 -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 SCIE급, A&HCI급,SSCI급, SCOPUS급) 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심사 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에서 입력하여야 함

- 3)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입력한 신청내용과 계획서 파일의 교체가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 마감일 후에는 교체·수정이 불가능함
 - 교체 및 수정한 후에는 신청완료 버튼을 반드시 다시 클릭해야함(클릭하지 않았을 경우는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
- 4) 온라인 신청 및 저술계획서 파일을 탑재하고 접수번호를 부여 받았을 경우에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저술계획서 파일을 탑재하기 전 『인쇄-미리보기』에서 1쪽씩만 보이는지 확인한 후 탑재함(『인쇄인쇄방식』을 '자동인쇄로 바꾼 후 저장')
-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붙임 5]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저술계획서와는 별도로 분리하여 탑재하여야 함

다. 온라인 신청 후

- 1) 신청자
 -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후 입력내용 및 제출서류(계획서 등) 1부를 출력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사업비 중앙관리 부서(산학협력단 등)에 제출
- 2) 주관연구기관의 사업비 중앙관리 부서
 - 주관연구기관은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입력내용 및 제출서류를 검토·확인한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기한 내에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주관연구기관 확인'을 입력 완료해야 함
(주관연구기관이 확인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되지 않음)

1. 평가단계

단계별	평가구분	평가내용	비 고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한국연구재단	
2단계	전공 평가	온라인평가	연구역량 및 저술계획서 평가	전공평가단
		PM Review	온라인 평가 결과 검토	PM
3단계	종합평가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종합평가단	

가. 제 1 단계 : 요건심사

- 심사방법 :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심사
- 심사내용 :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나. 제 2 단계 : 전공평가

- 평가방법: 온라인평가 + PM Review
 - 온라인평가 : 온라인으로 전문가에 의한 개별 평가
 - PM Review : 해당 학문분야 PM이 전공평가 결과를 검토하는 제도
(평가자 간 점수 격차에 대한 보완 및 검증 등)
- 평가내용 : 연구역량 및 저술계획서 우수성 등
-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1] 참조

다. 제 3 단계 : 종합평가

- 평가주관 : 종합평가단
- 평가내용 :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 ※ 평가결과 최종 점수 6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

2.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1] 참조

3. 선정 및 협약체결

- 예비선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예비선정과제를 공개하여 타 사업비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 등을 방지
- 최종선정 : 예비선정 기간 중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선정
- 협약체결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주관연구기관(장), 연구자 3자간 사업비 협약 체결

1. 사업비 지급

가. 지급방법

-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산학협력단장 등)을 경유하여 지급
 - 사업비는 과제별 협약체결 이후 집행하여야 함
 - ※ 다년 과제의 경우 단계평가 후 지원이 결정된 사업비 지급
 - ※ 사업비는 원고료로 지급하되 관련세법을 준수하여 계좌 이체함

나. 지급시기

1) 저술지원(3년 과제)

구분	1년차 사업비	2년차 사업비	3년차 사업비	
			(1)지급	(2)집행
평가 (자료제출)	신규선정	1단계평가 (연구개시 후 10개월 내)	-	2단계평가 (연구개시 후 2년 10개월 내)
지급시기	협약체결 후	계속지원 결정시	3년차 연구개시 후	출판적합 판정시
지급규모	10,000천원	10,000천원	(10,000천원)*	10,000천원**

* 3년차 연구개시 후, 연구자 소속기관의 산학협력단에 사업비 지급

** 출판적합 판정 시, 산학협력단에 기지급한 사업비에 대해 집행을 승인

2) 저술지원(2년 과제)

구분	1년차 사업비	2년차 사업비	
		(1)지급	(2)집행
평가 (자료제출)	신규선정	-	단계평가 (연구개시 후 22개월 내)
지급시기	협약체결 후	2년차 연구개시 후	출판적합 판정시
지급규모	10,000천원	(10,000천원)*	10,000천원**

* 2년차 연구개시 후, 연구자 소속기관의 산학협력단에 사업비 지급

** 출판적합 판정 시, 산학협력단에 기지급한 사업비에 대해 집행을 승인

3) 저술성과확산(학술서)

구분	1년차 사업비	2년차 사업비
평가 (자료제출)	신규선정	단계평가 (연구개시 후 22개월 내)
지급시기	협약체결 후	출판적합 판정시
지급규모	3,500천원*	11,500천원

* 1년차 사업비 지급시 총 사업비 15,000천원을 선 지원하되, 착수금 3,500천원만 집행하고 차년도 평가 후 잔액을 집행토록 함

2. 사업비 관리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이 중앙관리
- 동 사업비는 원고료로 지급하는 관계로 세부 정산은 생략함

1. 평가유형 및 내용

□ 단계보고서 제출 및 평가

① 저술지원 분야(3년과제)

가. 1단계보고서 제출 및 평가

- 제출시기 : 연구개시 후 10개월 이내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1단계보고서(작성 원고 포함)
 -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온라인입력)
 - 평가시기 : 1단계보고서 접수 후 다음 연도 연구개시 전
 - 평가내용
 - 1단계 저술 진행상황 및 2단계 연구추진계획
 -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및 타당성 검토
 - 평가방법 : 온라인 평가, 평가항목은 [붙임1] 참조
 - 평가결과 활용 : 계속지원 여부 결정
 - 계속지원 : 2년차 사업비 지급
 - 지원중단 : 2년차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향후 1년간 교육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신청 제한
- ※ 지원중단 결정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학술활동결과 보고 및 학술활동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나. 2단계보고서 제출 및 평가

- 제출시기 : 연구개시 후 34개월(2년 10개월) 이내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2단계보고서 및 80% 정도 완성 원고
 - 평가시기 : 2단계보고서 접수 후 연구기간 종료 전
 - 평가내용
 - 2단계 저술 진행상황 및 출판 등 향후 추진계획
 -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및 타당성 검토
 - 평가방법 : 패널평가, 평가항목은 [붙임1] 참조
 - 평가결과 활용
 - 출판적합 : 3년차 사업비를 지급하고 출판 추진
 - 출판유보 : 6개월간의 수정 기간을 주어 재평가
 - 출판부적합 : 3년차 사업비 지급 중지하고 향후 2년간 교육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사업비 신청 제한
- ※ 출판유보의 경우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지원중단 결정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학술활동결과 보고 및 학술활동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② 저술지원 분야(2년과제)

□ 단계보고서 제출 및 평가

- 제출시기 : 연구개시 후 22개월(1년 10개월) 이내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단계보고서 및 80% 정도 완성 원고
- 평가시기 : 단계보고서 접수 후 연구기간 종료 전
- 평가내용
 - 저술 진행상황 및 출판 등 향후 추진계획
 -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및 타당성 검토

- 평가방법 : 패널평가, 평가항목은 [붙임1] 참조
- 평가결과 활용
 - 출판적합 : 2년차 사업비를 지급하고 출판 추진
 - 출판유보 : 6개월간의 수정 기간을 주어 재평가
 - 출판부적합 : 2년차 사업비 지급 중지하고 향후 1년간 교육부 학술 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신청 제한
- ※ 출판유보의 경우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 지원중단 결정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학술활동결과 보고 및 학술활동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3 저술성과확산 분야

□ 단계보고서 제출 및 평가

- 제출시기 : 연구개시 후 22개월(1년 10개월) 이내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단계보고서 및 80% 정도 완성 원고
- 평가시기 : 단계보고서 접수 후 연구기간 종료 전
- 평가내용
 - 저술 진행상황 및 출판 등 향후 추진계획
 -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및 타당성 검토
- 평가방법 : 패널평가, 평가항목은 [붙임1] 참조
- 평가결과 활용
 - 출판적합 : 2년차 사업비를 지급하고 출판 추진
 - 출판유보 : 6개월간의 수정 기간을 주어 재평가
 - 출판부적합 : 2년차 사업비 지급 중지
- ※ 출판유보의 경우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 지원중단 결정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학술활동결과 보고 및 학술활동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2.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가.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자료
 - 학술활동 저술 원고 : 파일 탑재
 - 학술활동 요약문(국·영문) : 직접 입력
 - ※ 학술활동 연구요약문은 학술활동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작성
 - 학술활동 저술결과 개요보고서 : 직접 입력
 - 출관계약서 사본 : 스캔파일 탑재
 - ※ 저서 출판을 위한 출판사 선정은 저자의 선택에 위임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미제출 과제는 「학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제재 조치

나.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 제출시기 :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 제출방법 : 온라인 및 우편 제출
- 제출자료 : 출판 완료 도서 2부 우편 제출
- 사사표기 : 출판완료 도서에 반드시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함

학술활동 결과발표 시,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국문표기 시	이 저서는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과제번호)

- ※ 사사표기는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사업비 지원이 아닌 타 기관 일부 지원 병기 표기를 허용함
- 학술활동 결과물 미제출 과제는 「학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제재 조치

3. 학술활동 성과 관리

- 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학술활동결과물 제출 후에라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학술활동 성과(세계인명사전 등재 사실, 각종 언론보도 내용, 인력양성 실적 등) 및 학술활동결과물(논문, 저서, 각종 보고서, 특허, 기술발명, 원자료, 중간산출물)을 탑재하여야 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학술활동결과물을 송부하여야 함

* 학술활동결과물이란 연구과제 수행 중에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일체의 자료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학술활동결과발표물 등의 공식적인 자료를 말함

- 원자료는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참고한 일체의 자료(단, 저작권 미해결자료 및 타 기관 기 구축 자료는 제출 불가)
- 중간산출물은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체의 자료 (예: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통계자료 등)

- 한국연구재단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34조에 따라 연구 성과의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여야 함
 - 국회도서관, KERIS, NTIS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용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KRM)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원문, 음성, 동영상, 이미지 등) 서비스 제공 등
- 연구에 따른 결과물(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는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며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후 연간 1회 이상 한국연구재단에 판매 및 발간 (초판:初版 및 재판:再版)현황을 보고해야 함

1. 간접비 지급

- 해당사항 없음

2. 기타 참고사항

- 신청 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자(연구책임자)는 평가결과 발표 후 일정기간 해당 과제의 평가결과와 관련된 평가의견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및 평가내용 등 제반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아연구 등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경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함

문 의 처

□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 사업 및 신청요강 관련 문의

- 인문사회연구진흥팀 : 042-869-6207, 6202

○ 전공평가 관련 문의

- 어문학분야 : 02-3460-5521 ~ 3

- 역사철학분야 : 02-3460-5531 ~ 3

- 법정상경분야 : 042-869-6301 ~ 2

- 사회과학분야 : 042-869-6083 ~ 4

- 문화융복합분야 : 042-869-6136 ~ 8 (예술체육 및 복합학 분야)

○ 전산 관련 문의(온라인신청, 연구업적통합정보, 전산장애)

- 정보팀 Help Desk : 1544-6118

1. 신규과제 평가

● 저술지원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고
저술계획 (40)	독창성 (20)	. 연구주제의 창의성 및 독자성 . 저술 규모의 적정성	
	학문발전 공헌도 (20)	. 학문의 파급효과 . 해당분야연구의 선도적 역할	
연구역량 (60)	연구역량 (50)	. 최근 5년간 연구활동의 질적 수준	
	주제 관련성 (10)	. 연구역량과 주제와의 관련성	

● 저술성과확산(학술서)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고
저술계획 (40)	타당성 (20)	. 저술 계획의 구체성 및 규모의 적정성	
	연계성 (20)	. 연구성과와 저술계획의 연계성	
연구성과 (60)	연구성과의 우수성 (40)	. 기 수행 연구성과의 우수성	
	공헌도 (20)	. 해당 학문분야에서의 파급효과	

● 우수저서사후지원(교양서)

※ 우수저서사후지원(교양서) 평가계획은 추후 별도 공고

2. 단계보고서 평가

● 저술지원(3년)

<1단계보고서>

평가항목	평가내용
기 수행 연구실적	. 연구수행의 당초목표대비 진도실적
향후 연구계획 및 내용	. 기 수행 연구내용과의 연관성 . 차년도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 최종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2단계보고서>

평가항목	평가내용
80% 완성 원고에 대하여 출판적합 여부 평가	. 학문발전 공헌도 . 타학문에 대한 파급효과 . 가독성, 통일성

● 저술지원(2년)

<단계보고서>

평가항목	평가내용
80% 완성 원고에 대하여 출판적합 여부 평가	. 학문발전 공헌도 . 타학문에 대한 파급효과 . 가독성, 통일성

● 저술성과확산(학술서)

<단계보고서>

평가항목	평가내용
80% 완성 원고에 대하여 출판적합 여부 평가	. 학문발전 공헌도 . 타학문에 대한 파급효과 . 가독성, 통일성

연구기간	선택
2년 과제	
3년 과제	

저술계획서

신청분야 : 저술지원

※ 신청 해당사업의 양식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 아래 사항은 참고하신 후 삭제하시고 작성하십시오.

※ 저술계획은 서식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표”를 참조하여 자유롭게 기술 하십시오.

※ 저술계획서(출판계획 포함)는 **A4 용지 5~10매** 내외로 작성하십시오.

(참고문헌목록은 용지 매수에서 제외, 총 용량(Size)은 10MB 이내)

※ 저술완성분량(**300p 이상**)을 예상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저술완성원고 제출 시 당초계획분량을 초과한 경우는 무방하나, 부족할 경우 10% 범위에 한하여 오차 허용

※ 연구과제의 심사는 **무기명심사(Blind Review)**로 진행됩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파일명 및 파일내용에 신청자를 알아 볼 수 있는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참고문헌 목록에 있어 본인이 저자인 경우 본인표기는 무방합니다.**

1. 저술계획

2. 출판계획

※ 출판사 선정기준 및 계획, 예상되는 출판 추진일정 등을 기술

3. 예상 저술 분량

4. 기타사항

저 술 계 획 서

신청분야 : 저술성과확산지원

※ 신청 해당사업의 양식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기 수행 연구과제	선정년도 및 사업명	0000년 선정 0000사업
	과제명	
	논문제목	
	참여구분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원) 선택

※ 아래 사항은 참고하신 후 삭제하시고 작성하십시오.

※ 저술계획은 서식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표”를 참조하여 자유롭게 기술 하십시오.

※ 저술계획서(출판계획 포함)는 **A4 용지 5~10매** 내외로 작성하십시오.

(참고문헌목록은 용지 매수에서 제외, 총 용량(Size)은 10MB 이내)

※ 저술완성분량(**300p 이상**)을 예상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저술완성원고 제출 시 당초계획분량을 초과한 경우는 무방하나, 부족할 경우 10% 범위에 한하여 오차 허용

※ 연구과제의 심사는 **무기명심사(Blind Review)**로 진행됩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파일명 및 파일내용에 신청자를 알아 볼 수 있는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참고문헌 목록에 있어 본인이 저자인 경우 본인표기는 무방합니다.**

1. 기존 실적의 확장 필요성

(기존실적의 우수성, 대중적·학문적 확장 필요성 등)

2. 저술계획

3. 출판계획

※ 출판사 선정기준 및 계획, 예상되는 출판 추진일정 등을 기술

4. 예상 저술 분량

5. 기타사항

연구이력소개서

- ※ 본인 연구의 주요 경향 등을 업적 중심으로 기술 하십시오.
- ※ 1페이지 이내로 작성 하십시오. (휴먼명조 12포인트 기준)

대표 연구업적 요약문

구분1)		발행년도		게재권호(집)	권 호(집)
연번2)		학술지명			
제 목3)					
역 할4)		공동저자5)			명
<p>■ 초록(abstract) 또는 요약문 (특허의 경우 출원일, 출원국가 및 내용 등을 기재)</p> <p>※ 업적요약문과 업적전문에 신청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기재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성명, 소속 등).</p> <p>※ 신청서 화면에서 대표업적으로 지정한 3편은 모두 대표연구업적요약문을 작성하시고, 3편 중 2편은 전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 출판파일 이외에 연구자가 소유한 원문 파일 탑재 가능)</p> <p>※ 대표연구업적 요약문 및 대표업적 전문의 총 용량(Size)은 10MB 이내로 제한합니다. 용량이 초과되는 경우 오프라인 제출 또는 용량 확대 등이 불가합니다.</p>					

※ 온라인 신청 시 선택한 연구업적 3편에 대하여 각각 작성함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신청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는 기재하지 않음

- 1) 구분 : 논문, 저서, 역서, 학술지, 외국특허 중 택일하여 기재
- 2) 연번 :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대표 연구업적에 대하여 각각 연번 부여하여 작성함 (1~3번)
- 3) 제목 :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연구업적 제목
- 4) 역할 : 주저자, 공동저자 중 택일하여 기재
- 5) 공동저자 : 본인포함(단독일 경우 기입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는 연구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한국연구재단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의 개인정보는 연구비카드발급을 위해 신한카드에 관련정보가 제공되며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NTIS시스템에 제공됨
- 주민등록번호는 연구자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기본정보로 활용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연구계획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연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단의 연구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 업 명 저술출판지원사업 신청년도 2014년
 연구과제명 _____

참여인력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서 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귀하

1. 저술출판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저술출판지원사업』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저술 지원과 저술성과확산지원 및 우수저서사후지원으로 구분됩니다. 세부사업별 연구기간과 연구비규모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나 인문사회분야 우수 연구자의 저술발간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공통됩니다. 다만, 신청자격 요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는바, **저술지원분야**는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이 3편 이상 있는 연구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반해 **저술성과확산분야**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 기 참여한 연구자(참여구분 및 기한 없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지원규모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것은 신청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저술지원	저술성과확산지원	
		저술성과확산지원 (학술서)	우수저서사후지원 (교양서)
지원규모	연간 10백만원	총 15백만원	10백만원
지원기간	2~3년	2년	1년
연구개시	7월 1일(상반기사업)	7월 1일(상반기사업)	11월 1일(하반기사업)
연구유형	단독연구	단독 및 공동연구	
1책 3공 포함여부	연구물입규정 (1책 3공) 포함	연구물입규정(1책 3공) 미포함	

- ※ 기 수행한 과제의 연구결과물이 '저술'인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우수저서사후지원분야의 신청요강은 2014년 6월에 별도 공지 예정

2. 원고료 성격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 본 저술출판지원사업의 연구비는 저술을 위한 원고료 성격으로 지급함으로써 세부 항목 설정, 정산 및 증빙서류 제출 등의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인문학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 주관연구기관에서 연구자에게 연구비(원고료) 지급시 세금을 제외함

3. 연구비는 단계보고서 평가 후 지급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 저술지원분야의 3년 과제는 3년간 2번의 단계보고서 평가가 있습니다. 연구개시 후 10백만원이 지급되고, 10개월째(1단계)와 2년 10개월째(2단계)에 단계보고서를 접수, 평가가 이루어지며 계속지원으로 평가된 경우 각 10백만원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연구개시 후 1년 10개월째(2년차)에는 평가 및 연구비 지급이 없습니다.

- ➔ 저술지원분야의 2년 과제는 2년간 1번의 단계보고서 평가가 있습니다. 연구개시 후 10백만원이 지급되고, 연구개시 후 22개월째에 단계보고서를 접수, 평가가 이루어지며 계속지원으로 평가된 경우 각 10백만원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 ➔ 저술성과확산(학술서/상반기사업)은 2년간 1번의 단계평가가 있습니다. 연구개시 후 15백만원이 주관기관(학교)에 선 지급되나 연구자에게는 착수금(원고료) 350만원이 집행되고, 연구개시 후 22개월째에 단계보고서를 접수, 평가가 이루어진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잔액 1,150만원의 잔금(원고료)가 지급됩니다.

4. 출판을 담당할 출판사는 어떻게 정해야 하며, 저작권.인세 및 출판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 ➔ 출판사 선정은 연구자(소속기관의 해당부서와 사전협의)에게 일임하되 학문영역별 권위있는 출판사를 선택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저작권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며(아래 문구 참조), 인세 등 연구책임자(저자)에 대한 보상은 산학협력단 또는 학교법인의 내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합니다. 별도의 출판비 지원은 없으며, 총 지원연구비 내에서 추진하셔야 합니다.
- ※ 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5.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내 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전임연구인력으로서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자격에 해당합니까?

- ➔ 본 사업은 원고료 성격의 지원으로 인건비성 경비가 아니므로, 현재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사업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 할지라도 인건비 중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6. 타 사업에 연구책임자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 저술출판지원사업(저술지원)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 ➔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는 1인 3과제(연구책임자 1 + 공동연구 2 이내) 원칙이 적용되므로 연구책임자로서 2과제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단,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 종료일이 2014.12.31. 까지인 과제는 참여제한 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술성과확산지원의 경우는 1책 3공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7. 기존에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저술 할 경우, 동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지요?

➔ 기 발표 내용이 30% 이상 포함된 저술계획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이후에도 내용의 중복성 여부는 단계별로 점검할 예정이며,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출판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신청요강에 명시된 제재 조치를 받습니다.

8. 저술계획서에서 '저술완성 분량을 300페이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페이지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입니까?

➔ 상기 문구의 의미는, '출간완료된 도서의 최소한의 분량을 300쪽 이상' 으로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출간도서에 대한 기준 사이즈는 없으므로, 연구자께서는 학술저서로서 적합한 사이즈를 출판사와 상의하여 정하시고 최종 출간된 분량이 300쪽 이상이면 됩니다.

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양식을 출력하셔서 서명하신 후 스캔하여 파일(PDF, HWP, DOC)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탑재하시면 됩니다.)

※ 저술계획서에 포함되어 제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